

**2020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연 차 보 고 서**



# 목 차

## I.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개황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현황 및 연혁 ..... 3
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 4
3.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 ..... 8

## II.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1. 예금자보호기금 조성 ..... 11
2. 부실조합 등의 정리를 위한 자금지원 ..... 13
3. 사후관리 ..... 15
4. 조합구조개선 추진실적 ..... 19
5. 부실예방업무 ..... 20

## III. 2020년도 결산현황

1. 결산개황 ..... 25
2. 재무제표 ..... 26



---

# I.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개황

---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현황 및 연혁
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3.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



##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현황 및 연혁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 등 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중앙회에 설치·운영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산림조합 예금자보호제도 연혁 >

1998.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 예금자보호제도 도입</li> <li>■ 「안전기금관리규정」 제정에 따라 중앙회 신용사업부에서 안전기금 운용 (보험료율 0.09%, 보장한도 2천만원)</li> </ul>
1999.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li> </ul>
1999.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율 인상 : 0.15% ← 0.09%</li> </ul>
2000.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규정」으로 개정 보장한도 확대 (2000.6.30일 이전에 납입한 예·적금 전액보장)</li> </ul>
2001.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한도 인상 : 5천만원 ← 2천만원</li> </ul>
2008.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li> <li>■ 기금관리조직을 신용사업부에서 회원지원부로 이관</li> </ul>
2014.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간 예·적금은 보호제외</li> </ul> </li> </ul>
2020. 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기금제」 도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적립률이 목표구간에 해당되면 예금보험료를 감액해주는 제도로 2020년 3분기부터 예금보험료 50% 감액</li> </ul> </li> </ul>

## 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는 부실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과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의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1999.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총 13명), 임기 2년</li> <li>- 위원장 : 중앙회 부회장,</li> <li>- 위 원 : 내부 12 (중앙회 임직원 4 , 비상임이사 4, 조합장4)</li> </ul>
2000.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및 위원회 구성 변경(총 11명)</li> <li>- 위원장 : 중앙회 상임이사</li> <li>- 위 원 : 9명 (중앙회 임직원 5 , 이사조합장 4, 산림청 1)</li> </ul>
2003.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변경</li> <li>- 중앙회 상임이사⇒ 부회장</li> </ul>
2008.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변경(총 12명), 임기 3년</li> <li>- 위원장 : 중앙회 회장</li> <li>- 위 원 : 내부 3, 외부 8(현재 구성과 동일)</li> </ul>

기금관리위원은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위원 등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의 임기는 정함이 없어 변경시까지 가능

###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정부기관 지정*	산림청 지정단체	산림청장 위촉	농해수위 위촉	중앙회장 위촉	중앙회장 지정
1명	1명	3명 (공무원)	2명 (임업단체)	1명 (전문가)	2명	1명 (조합장)	1명 (임직원)

\* 산림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사항 >

-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부실조합등의 결정·지원등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기금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개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개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등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개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개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선임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개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채권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위원회 개최현황

2008년 2월 27일 제1차 기금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2020년말까지 52회를 개최하여 총 151건 안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심의·의결사항 102건, 보고사항 49건의 안건 처리

< 연도별 위원회 개최 및 처리현황 >

년 도	개최횟수	계	보 고	심의·의결
2008년	6	17	6	11
2009년	7	19	6	13
2010년	5	16	6	10
2011년	4	10	4	6
2012년	4	13	4	9
2013년	4	11	3	8
2014년	4	10	2	8
2015년	3	10	3	7
2016년	3	9	2	7
2017년	3	9	3	6
2018년	3	8	3	5
2019년	3	10	5	5
2020년	3	9	2	7

□ 2020년 기금관리위원회 개최

○ 제50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

2020년 2월 25일 개최된 제50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결산(안) 1건을 처리

■ 의안 제1호 : 2019년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결산(안)

2019년말 기준 총자산은 1,033억 원으로 전기 931억 원 대비 102억 원 증가, 당기 기금잉여금은 전기 86억 원 대비 16억 원 증가한 102억 원으로 결산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의결

○ 제5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

2020년 5월 28일 개최된 제5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위원회에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여유자금운용(안) 등 심의·의결 안건 5건 및 보고 안건 1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 처리

■ 의안 제1호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여유자금운용(안)

전년도 기금 적립액의 1/3 범위내에서 전년도 적자조합 등 회원조합에 보통예금 (1년, 10억원 한도)으로 예치·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

\* 상호금융 미취급 조합 금융업무 개시 경우 2년, 20억 한도내 예치

■ 의안 제2호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안)

기금 적립액 목표 규모를 1.36%이상 ~ 1.77%미만으로 설정하고 2020년 보험료 50% 감면을 적용(안)을 원안대로 의결

■ 의안 제3호 : 부실우려조합 추가결정 및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019년말 경영상태실사 결과 순자본비율 2%미만인 △△산림조합을 2020년 경영개선권고 조합으로 추가 결정하고 자산건전성 4등급인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원안대로 의결

■ 의안 제4호 :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적기시정조치(안)

신규 지정 부실(우려)조합을 포함한 3개 조합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 시정조치 결정(안)을 수정 의결

\* 수정의결사항 : 재편입된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1월 제재조치 유예

■ 의안 제5호 :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자금 지원(안)

부실우려조합 2개 조합에 경영개선자금 54백만원 지원(안)을 원안대로 의결

##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개황

### ○ 제5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

2020년 12월 16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제5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산(안) 심의·의결 안건 1건 및 보고 안건 1건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 처리

#### ■ 의안 제1호 : 2021년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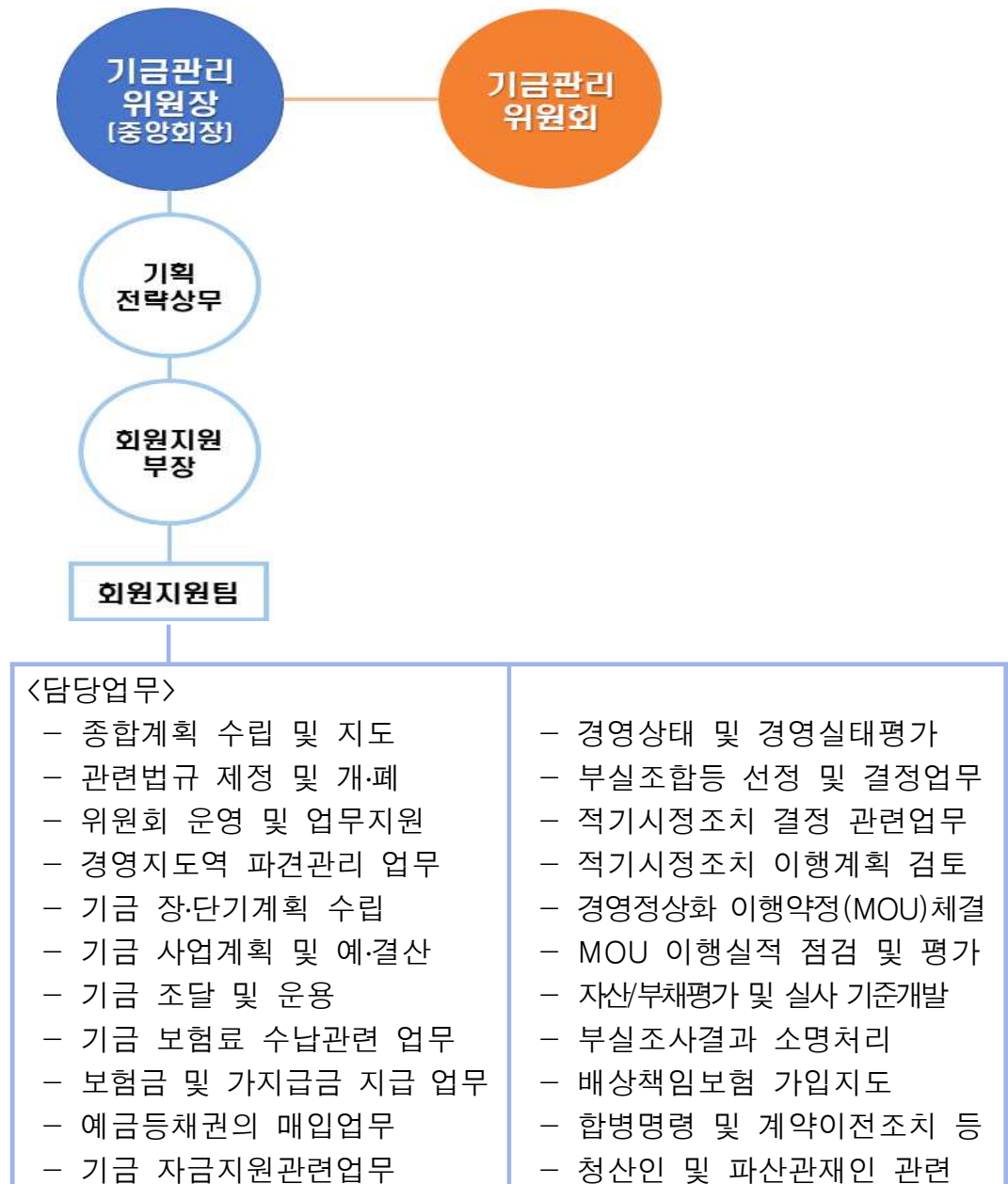
수익 예산은 59억 원으로 전년 108억 원 대비 49억 원 감소, 비용 예산은 2억 원으로 전년 3억 원 대비 1억 원이 감소,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48억 원 감소한 57억 원 발생하는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3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

관리기관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하며,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 기금관리 및 조합구조개선업무를 수행

< 기금관리위원회 기구표 >



---

## Ⅱ.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1. 상호금융예금자호보기금 조성
2.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지원
3. 사후관리
4. 조합구조개선 추진 실적
5. 부실예방업무 추진 실적



# 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조성

## □ 기금 조성액

1998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안전기금으로 출발한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은 2020년말 현재 기금잔액은 1,135억 원 조성

(단위 : 백만원)

2019년말 적립액 (적립률)	수 익				지 출		2020년말 기금잔액 (적립률)
	계	보험료	출연금	운영수익	계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	
103,291 (1.58%)	10,369	8,963	6	1,400	171	171	113,489 (1.55%)

## □ 기금 재원

### ○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 보험료
  -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은 매분기 종료일 15일 이내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 ⇒ 보험료 = 매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5/1,000 이내
- 보험요율 : 0.15% (산림청 고시)
  - ⇒ 1998년 12월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 시행으로 0.09%를 적용하였고, 이후 기금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 12. 17.부터 현재까지 0.15% 적용
- 「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시행령」상 부보제외(예금자보호대상 아님) 대상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6. 조합

### ○ 정부 및 중앙회 출연금

### ○ 정부,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관리기관이 매입·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 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 목표기금제 도입

- 산림조합 예금보험료 부담 완화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3분기부터 목표기금제 시행  
(「산림조합개선법」 제31조의2, 2020.8.19. 시행)
- 보험료 감면율은 기금의 적립률 및 예상 수입·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금적립률의 목표 규모 1.36%이상(하한) ~ 1.77%미만(상한)까지 설정

< 기금 목표구간에 따른 보험료 감면율 >

전기 기금적립률	당기보험료 감면율
1.36% 이상 ~ 1.50% 미만	25%내
1.50% 이상 ~ 1.65% 미만	50%내
1.65% 이상 ~ 1.77% 미만	75%내

- 2020년 3분기분 납입보험료부터 보험료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조합이 부담하는 실질보험료율은 0.075%임



## 2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지원

### □ 자금지원 원칙

#### ○ 손실부담의 원칙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자금 지원

자금이 지원된 조합에 대한 부실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거나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 자제구조조정 노력

자금지원대상조합의 자체 구조개선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자금지원 조합 간에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함

### □ 자금지원

2020년 현재까지 구조조정자금 2개 조합 92억 원, 경영개선자금 16개 조합 99억 원 총 18개 조합에 191억 원을 지원

< 2020년 경영개선자금지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영개선		합병		사업양도		합계	
	'20년	누계	'20년	누계	'20년	누계	'20년	누계
금액	54	9,902	-	4,231	-	4,994	54	19,127
조합수	2	16	-	1	-	1	2	18

- **(자금지원)** 「산림조합개선법」 제2조10에 의하면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및 자금의 대출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
- **(구조조정자금)**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지원대상부실액은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재산실사를 실시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채무초과액)을 출연의 방식으로 지원하며, 합병의 경우 유인책으로 채무초과액에 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함
  - ⇒ 재산실시결과 부실액의 100%을 지원
- **(경영개선자금)**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순자본비율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차보전의 방식으로 3 ~ 5년간 분할하여 지원함
  - ⇒ 재산실시결과 지원소요액의 80%(기금 70%, 중앙회 10%)를 지원(자구노력20%)
- **(예금대지급)**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파산선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고, 예금자 등의 부보예금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보험금을 지급

#### □ 자금지원 조건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병은 합병등기 완료 후,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그 이행의 완료 후 지원

#### □ 자금지원의 회수

대출금의 지원기간 만료일에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만료일 이전이라도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대출금 만기일 전 자금 회수 사유**
  - ⇒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사항 또는 적기시정조치 사항을 위반하여 경영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적기시정조치사유가 해소된 경우
  - ⇒ 기타 기금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구조개선자금이 투입된 조합에 대해 조합자체 구조조정 노력 촉구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적기시정조치

조합의 경영상태를 3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상태가 악화된 조합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의 시정조치를 취하여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부실화를 예방

○ 조치기준

경영상태 판단기준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을 시행

구 분	기 준	내 용
경영 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자본비율 2%미만 조합</li> <li>■ 경영상태평가 결과 4등급 조합</li> <li>■ 경영상태평가결과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정성등급 4등급 이하 조합</li> <li>■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li> <li>■ 자기자본의 증대나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li> <li>■ 투자위험이 큰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의 제한</li> <li>■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li> </ul>
경영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자본비 <math>\Delta</math>3%미만조합</li> <li>■ 경영상태평가결과 5등급 조합</li> <li>■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li> <li>■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적기시정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의 감축 및 점포·조직의 축소</li> <li>■ 임원의 직무정지, 합병 또는 합병요구</li> <li>■ 사업의 일부 정지, 사업의 일부 양도나 사업의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li> <li>■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li> </ul>

구 분	기 준	내 용
경영 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자본비율 △15%미만 조합</li> <li>■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li> <li>■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 지급,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산림조합개선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li> <li>■ 경영상태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li> <li>■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적기시정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소</li> <li>■ 사업의 전부 정지</li> <li>■ 합병</li> <li>■ 사업의 전부 양도나 사업의 전부와 관련된 계약이전</li> <li>■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li> </ul>

○ 적기시정조치 이행사항 점검

관리기관은 「산림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매분기말 기준으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적기시정조치 주요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곤란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함

< 2020년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 적기시정조치 내용 >

적기시정조치	조 합 명	순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내용	
			개별사항	공통사항
경영개선권고	○○	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장 견책, 상무 견책</li> <li>· 산림사업수익률 개선</li> <li>· 핵심예금비율 증대</li> <li>· 예수금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사업수익 증대</li> <li>· 인건비율 감축</li> </ul>
경영개선권고	△△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사업수익 증대</li> <li>· 산림사업수익률 개선</li> <li>· 유통사업 1인당 영업이익 증대</li> <li>· 예수금 확대</li> <li>· 예대비율 증진</li> <li>· 연체율 감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관리비율 감축</li> <li>· 출자금 증대</li> <li>· 이익배당의 제한</li> <li>· 위험자산의 취득금지</li> </ul>
경영개선명령	□□	△117.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장, 상무 각각 주의촉구</li> <li>· 불용자산의 처분</li> <li>· 산림사업수익률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 및 외부출자의 제한</li> </ul>

□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제9조에 따라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산림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 규정」 제14조에 따라 반기말 기준으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주요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곤란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경영개선계획 필수이행사항 >

구조개선법 시행령	세 부 기 준	
	내 용	수 식
가.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비율	순자본비율	$\frac{\text{총자산} - \text{총부채} - \text{가입금} + \text{대손충당금}}{\text{총자산} + \text{대손충당금}}$ * 단, 경영개선자금 대출금 및 차입금 제외함
나. 수익성기준		
-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총자산사업이익율	$\frac{\text{사업이익}}{\text{총자산}}$
-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수지비율	$\frac{\text{사업비용} + \text{사업관리비} + \text{사업외비용}}{\text{사업수익} + \text{사업외수익}}$
- 임직원 1인당 생산성	1인당 사업이익	$\frac{\text{사업이익}}{\text{임직원수}}$
다. 자산건전성		
- 연체채권의 비율	연체채권비율	$\frac{\text{연체채권}}{\text{대출채권}}$
- 부실채권의 비율	부실채권비율	$\frac{\text{회수의문채권} + \text{추정손실채권}}{\text{대출채권}}$
라. 자기자본의 증대	자기자본의 증대	자기자본

< 2020년 경영정상화이행약정 현황 >

대상조합	약정기간	년차별 순자본비율 목표		
		2020년	2021년	2022년
○○	2020년 ~ 2022년(3년)	1.93%	2.18%	2.43%
△△	2020년 ~ 2022년(3년)	2.00%	2.16%	2.43%

□ 부실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부실관련자의 위법·위규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공평한 손실분담을 통해 조합의 손실을 보전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

- 관련법규  
⇒ 「산림조합 구조개선법」제15조, 「손해배상청구행사 업무취급규정」, 「손해배상청구기준」
- 부실조사 실시사유  
⇒ 「구조개선법」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 「구조개선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 부실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실시 현황 >

구분	2012이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부실조사	16	4	1	-	3	1	-	-	2
손해배상청구	14	-	-	-	-	-	-	-	-

\* 손해배상청구액 4,357백만원 중 2,239백만원 회수  
(소송결과 면책 1,974 / 특수채권 관리 144)

## 4 | 조합구조개선 추진 실적

### □ 조치완료 현황

200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21개 조합에 대하여 구조개선 조치 완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년
부실(우려)조합	19개	16개	13개	9개	11개	10개	8개	8개	7개	3개	2개	2개	3개
경영정상화조합	3개	3개	4개	2개	1개	2개	-	1개	4개	1개	-	-	
경영개선 자금지원	1,219	1,203	1,006	798	1,053	919	900	853	545	554	399	399	54
구조조정 자금지원	4,231	4,915	79	-	-	-	-	-	-	-	-	-	-

\* '13년부터 국고 지원 중단

### < 산림조합 구조개선 추진 사례 >

구조개선	내역	지원자금 (백만원)	비고
합 병	대구조합을 달성조합으로 흡수합병	4,231	('08.12.15.)
파 산	전북표고조합 파산	-	('08.11.13.)
사업양도	△△조합 신용사업을 □□조합으로 양도	4,994	('09.9.1.)
경영개선	○○ 외 17개 조합 경영정상화 완료	9,902	경영개선미지원조합 포함

### □ 경영상태 실제조사 실시

부실 조합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2020년(2019년말 기준) 9개 조합 대하여 실시

### < 경영상태 실제조사 현황 >

구 분	08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년
조합수	35개	36개	27개	26개	26개	16개	11개	10개	11개	10개	7개	9개	9개

## 5 부실예방업무 추진 실적

부실예방업무는 경영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도모하여 기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예금자보호에 기여코자 함

###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조합의 경영위험 및 부실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 또는 시정요구 함으로 조합 부실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2012년부터 「부실평가시스템」과 「이상징후지표」를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 부실예측모형(매 분기별), 이상징후지표(매월)

### □ 경영진단 실시

부실평가시스템 시행에 따라 경영위험 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도 및 시정 요구함으로써 조합 부실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2020년 3개 조합 실시

\* 대상조합 : 부실평가시스템 평가결과 2회(2분기 ~ 3분기) 연속 위험 조합 중 선정

\*\* 순자본 비율 등 9개 지표에 대한 조합 경쟁지수 산출

### < 경영상태 실제조사 현황 >

구 분	08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년
조합수	-	-	-	5개	3개	4개	4개	4개	1개	2개	10개	개	3개



□ 경영컨설팅 실시

○ 목 적

조합의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과 제반 환경을 분석하고, 부실규모와 원인에 대한 객관적평가를 통해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경영개선 추진

○ 성 과

2020년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 적자 21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6개 조합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를 보임

< 경영컨설팅 실시 현황 >

조 합 수	조 치 사 항	평 균 이행률	개 선 효 과
21개	· 현지점검을 통해 조합의 경영목표 부여 · 분기별 경영목표이행률 점검	88%	· 당기손익 90억 원 개선 · 21개 중 16개 조합 흑자전환



---

## III. 2020년도 결산현황

---

1. 결산 개황
2. 재무제표



1

결산개황

□ 결산근거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회계규정」 제18조, 제23조)

□ 재무현황

2020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1,135억 원으로 전기 1,033억 원 대비 102억 원 증가, 예치금은 1,081억 원, 단기대출금은 50억원이며, 2020년말 기금적립금은 1,135억 원으로 전기 1,033억원 대비 102억 원 증가함

□ 손익현황

2020년 수익은 104억 원, 비용은 2억원으로 기금잉여금 102억 원을 실현했으며, 수익은 보험료 수익 90억 원, 기금운용수익 14억 원이며, 비용은 관리기관운영비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자산 및 손익 현황

(단위 : 억 원)



2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당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단위 : 원)

계정과목	2020년	2019년	증 △ 감
I. 유동자산	113,489,233,206	103,290,587,748	10,198,645,458
1. 운용자산	108,136,783,466	102,504,345,597	5,632,437,869
(1) 예치금	108,136,783,466	102,504,345,597	5,632,437,869
일시예치금	34,424,783,466	56,345,597	34,368,437,869
정기예치금	73,712,000,000	102,448,000,000	△28,736,000,000
2. 단기지원자산	4,964,000,000	-	4,964,000,000
(1) 단기대출금	4,964,000,000	-	4,964,000,000
경영개선대출금	4,964,000,000	-	4,964,000,000
3. 기타유동자산	388,449,740	786,242,151	△397,792,411
(1) 미수금	72,980	-	72,980
(2) 미수수익	388,376,760	786,242,151	△397,865,391
자 산 합 계	113,489,233,206	103,290,587,748	10,198,645,458
I. 유동부채	-	-	-
1. 미지급금	-	-	-
II. 비유동부채	-	-	-
1. 지원부채	-	-	-
부 채 합 계	-	-	-
I. 기금적립금	103,290,587,748	93,066,777,336	10,223,810,412
II. 기금잉여금	10,198,645,458	10,223,810,412	△25,164,954
자 본 합 계	113,489,233,206	103,290,587,748	10,198,645,458
부 채 및 자 본 합 계	113,489,233,206	103,290,587,748	10,198,645,458

손익계산서

당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단위 : 원)

계정과목	2020년	2019년	증 감
I. 사업수익	10,369,900,363	10,421,257,112	△51,356,749
1. 기금수익	8,969,895,180	8,894,469,070	75,426,110
(1) 출연금	6,799,000	49,863,000	△43,064,000
중앙회출연금	6,799,000	49,863,000	△43,064,000
(2) 보험료수입	8,963,096,180	8,844,606,070	118,490,110
회원조합보험료	8,963,096,180	8,844,606,070	118,490,110
2. 기금운용수익	1,400,005,183	1,526,788,042	△126,782,859
(1) 예치금이자	1,400,005,183	1,526,788,042	△126,782,789
일시에치금이자	15,944,059	232,969	15,711,160
정기에치금이자	1,384,061,124	1,526,555,073	△142,493,949
II. 사업비용	171,254,905	197,446,700	△26,191,725
1. 사업관리비	171,254,905	197,446,700	△26,191,725
(1) 인건비	87,937,530	77,934,720	10,002,810
(2) 경비	35,317,375	35,511,980	△194,605
회의비	7,516,380	8,946,500	△1,430,120
복리후생비	27,058,295	24,023,580	3,034,715
교육훈련비	680,200	2,479,400	△1,799,200
세금과공과	62,500	62,500	-
(3) 지급수수료	48,000,000	84,000,000	△36,000,000
지급수수료	48,000,000	84,000,000	△36,000,000
III. 사업이익	10,198,645,458	10,223,810,412	△25,164,954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198,645,458	10,223,810,412	△25,164,954
V. 법인세비용	0	0	0
VI. 당기순이익	10,198,645,458	10,223,810,412	△25,164,954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당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21년 2월 일

처분확정일 : 2021년 2월 22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단위 : 원)

계정과목	2020년		2019년	
I. 처분전 이익잉여금		10,198,645,458		10,223,810,412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0		0	
2. 당기순이익	10,198,645,458		10,223,810,412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10,198,645,458		10,223,810,412	
1.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적립		10,198,645,458		10,223,810,412
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0		0	